

제주지방법원 2024. 12. 5 선고 2024가단6341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제주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2. 5.

주 문

1. 피고 A는 원고에게 30,956,999원 및 그중 30,268,760원에 대하여 2024. 4. 29.부터 2024. 8. 14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9. 25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3.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3. 9. 25. 접수 제42822호로,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23. 9. 25. 접수 제70820호로 각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김영욱

별지